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4輯(2003)

## 러시아 형법의 개관

이태언\*

### <목 차>

- I. 러시아 형법개정의 과정
  - 1. 전시공산주의(1918-1921)
  - 2. 신경제정책(1921-1927)
  - 3. 스탈린이후 (1928-1936)
  - 4. 흐르시조브의 제 2법전화시대(1956-1963)
  - 5. 브레즈네프의 정체시대 (1964-1982)
  - 6. 고르바초프와 페레스 트로이카(1985-1991)
- II. 소련형법개판 (1988년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함.)
  - 1. 總則
  - 2. 各則

### I. 러시아 형법개정의 과정

러시아 형법사에 있어서 형법의 발전은 사회·경제·정치적인 발전의 시대적 구분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고, 사회발전에 따른 긴급한 정치·경제·사회적 임무에 의해 규정되었다. 형법의 배경으로서의 정치·경제 사회의 국면을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 2 比較法學 (第 14 輯)

①전시공산주의 ②신경제정책시기 ③스탈린 이후 소비에트 농업의 집단화 시기 ④소비에트 경제의 산업화시기로 나눌 수 있으나 형법사적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7시기로 나누어 시기에 따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1. 전시공산주의(1918-1921)

초기 공산정권은 러시아 내부, 외부 양측에 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제거하고 혁명을 성취시켜야 했다. 생존의 기본적인 임무에 직면하여 러시아 정부는 법의 영역 내에서는 정치적 투쟁이 불가능함을 알고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혁명적인 법과 법기구를 무시하고 “혁명의 적에게 죽음을”이라는 스로건으로 통치했는데 혁명이념에 명시되어 있던 혁명수행에 적절치 못한 절차들은 중지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정부 푸로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수립을 위해 입법에 의해 기존의 모든 형태의 정부를 소멸토록 했다. 이 입장에서의 새로운 법령은 ①사회주의 사고의 선전, ②사회의 모든 반혁명적 요소를 열거함, ③투기꾼과 불량배들의 제거, ④ 혁명의 모든 적에 대한 냉혹한 처벌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 당시 법령은 대중계몽형태였는데 대중들은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시기의 법령들은 ① 브로조아지와 그들 대리인들과의 투쟁, ②투기에 대한 투쟁, ③반혁명 분자에 대한 투쟁, ④ 혁명에 반대하는 시민 투쟁의 지도자들의 체포 ⑤카데츠당 (The party of the Kadets)에 의한 부르조아지 반란의 진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선전선동을 위한 행동강령일 뿐 법규법의 형태가 아니었다. 레닌은 「우리의 포고증 대다수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포고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전진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다」고 한말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1918, 4월에는 - 17개의 특별형법적인 포고와 개개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15개의 법규가 공포되었는데 1918년 말에는 특별형법적 포고가 40개 개별적 법규69개로 되었다. 그 중에는 ①토지에 관한 반혁명 범죄, ②칼레닌, 코르닐로프 등의 반혁명적 반란과의 투쟁에 대하여 (17. 11. 26), ③혁명에 반대하는 내란 주모자의 체포에 대하여( ), ④카데스당을 지도하는 부르조아지들의 반혁명적 반란의 진압에 대하여, ⑤출판의 혁명법정에 대하여 - 출판수단을 통한범죄 (18. 1.28), ⑥인민위원회의 결정 경보(警報)에 대하여 - 반혁명적 목적을 가진 주민의 결집을 금지함 (18. 7. 30), ⑦공무원 범죄인 중 · 수뢰(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중대한 반혁명적 범죄로 하여 혁명법정의 관할에 두었다.), ⑧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재산침해는 위험한 범죄로 보고 혁명법정에서 관할하였다, ⑨사보타지와의 투쟁 - 고급우편 전신관리의 사보타지와의 투쟁에 대하여 (17. 11.19), ⑩군대의 양식사업을 사보타지하고 평화의 체결을 방해하는 부르조아지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투쟁에 대하여 ( 17.11.11), ⑪식량관리의 사보타지에 대하여 (17. 12. 5), ⑫투기꾼에 대한 것으로- 투기와의 투쟁에 대하여(18. 7. 22) 당시 도시와 농촌에서 수백만의 소경영주와 상인이 투기를 자행하였고, 공물을 투기하는 부농은 대중의 궁핍에 편승하여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18년 당시 혁명법정에서 처벌 받은자의 46%가 투기 때문이었다.

이들 혁명 초기에는 “혁명적 법률을 준엄하게 적용하여 벌한다”는 식으로 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시였음에도 형벌은 고작 벌금, 재산몰수 , 강제적 공공노동, 자유박탈 등에 불과하였다.

러시아 연방공화국 형법의 지도원리(1919. 12)에서는 형법적용에 대한 각 지방, 각 재판소의 불균형 및 그에 대한 견해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각 인민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실무지침이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사회주의 형법의 기본원리를 공식화 한 것이 되어 뒷날 형사입법, 특히 형법총칙의 모델이 되었다. 이 지도원리는 전문과 27개조로 되어있다.

#### 4 比較法學 (第 14 輯)

### 2. 신경제정책(1921-1927)

전시 경제정책은 레닌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그들의 경제적 적들인 자본주의적인 경제질서를 부인하는 정책을 완화 한 것에서부터 나왔다.

즉, 신경제정책은 공산주의 투쟁의 전략과 전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자본주의에 대한 전술적 양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법규칙의 외관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초기에 해체되었던 법기구 중의 일부가 회복되어 제 1차 소비에트 형법전(1922)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법은 당연히 신경제정책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 3. 스탈린이후 (1928-1936)

1928년 요셉 스탈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농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개별 농민들을 거대한 농업협동체로 편성했는데 농민들은 이에 강제로 가입해야했고, 국가 수매 기구에서 결정하는 가격으로 그들의 생산물을 팔아야 했는데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보유해 오던 토지를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토지의 국유화에 성공한 스탈린은 국민의 개별적인 권리의 행사 중지를 통한 거대한 산업화 계획에 착수하여 직업의 이전이나 포기를 범죄로 규정했고, 허가 없는 이주도 범죄로 보아 통행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또 산업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태업(sabotage) 파괴행위(wrecking), 빈번한 화장실출입(toiletism)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범죄들이 추가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는 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 회생되고 말았는데 형법은 스탈린이 이루고자 했는 노력과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의 하나였다.

스탈린의 사후에는 소비에트법의 탈스탈린화(de-stalinization) 추세에 맞추어 형법도 다소간 자유화되어 i)스탈린개혁 초기의 범죄중 일부가 탈범죄화 되었고, 형소법중 적절한 절차법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흐

르시조브는 형법전에 특정유형의 범죄를 삭제하고 同志-재판소에 의지하는 계획을 착수했으나 브레즈네프는 실용적 인물이어서 형법의 권한을 동지재판소에 넘기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아 형법상 특정범죄들이 상단히 증가했다.(흐르시조프는 이상주의자로 소련이 곧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 많은 부분에서 완화정책을 썼으나 브레즈네프는 반대적인 입장이었다.)

#### 4. 흐르시조브와 제 2법전화시대(1956-1963)

1953년 스탈린의 사망 후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시대의 강압적인 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위험성이 경미한 직무범죄나, 경제범죄, 일상생활상의 범죄등은 행정 및 징계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인해 낙태의 폐지, 공공재산에 대한 경미한 절도의 감형, 무단결근죄 폐지 등이 이루어 졌고 스탈린 시대에 폐지되었던 가석방제도도 부활되었다. 또 유추해석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규정되었으며 처벌범위의 명확화와 형의 완화가 이루어졌다.

#### 5. 브레즈네프의 정체시대 (1964-1982)

형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범죄로부터 개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대되고,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 가석방 조건이 제한되었고, 강간이나 통화규제위반(암달러 매매)등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다시 반동적으로 회기하는 결과가 되어 형법전의 형식적인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정도로 대폭적인 개정, 보완, 삭제가 이루어져 종래 형법의 %가 변경되었다.

1) 60년대에 새로이 범죄로 추가된 것은 ①행형시설에 대한 테러행위 ②자동차불법사용 ③외국인 체재 규칙위반 ④소련의 국가 사회 체제를 손상시키는 허위정보 전파 ⑤음주운전 ⑥정비불량 자동차 사용 ⑦알콜

## 6 比較法學 (第 14 輯)

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 ⑧노동교육제도 ⑨위험한 누범자에 대한 가석방 제한 등이었다.

2) 70년대 개정으로 추가된 범죄는 ①성병치료회피죄 ②자유형집행의 회피죄 ③직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는 죄 ④항공기 납치죄 ⑤폭발물을 공중운송하는 죄 ⑥마취제 불법획득죄 ⑦독극물 불법제조 판매죄 등이다.

3) 80년대에도 ①가솔린 등 연료류의 부정반출 ②행형시설 관리부의 요구에 대한 불복종 ③직무상 비밀정보의 외국조직에의 제공 ④훈장, 메달 등의 매매 및 손괴 ⑤관리책임자에 의한 음주운전의 허용 ⑥공용자동차의 불법사용 ⑦전기, 가스등의 불법사용 ⑧수입신고서 제출,회피 ⑨폭력선전 영화의 제작 ⑩무술의 불법교수 등이 추가되었다.

총칙에서도 ①자유형태의 형벌확충이 이루어져 이들을 자유형에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집행유예자에 대한 민경의 행동감시, ③의무적 노동을 수반한 가석방 제도 ④기생적 생활자에 대한 교육 및 노동시설로의 송치 등이 규정되었다. 이같은 형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들이 추가된 이유는 만성적인 경제정체로 인한 물자부족과 개혁의 목표가 불분명해짐으로서 사회전체가 보수화하여 정체 상태로 빠진 때문이었다.

### 6. 고르바초프와 페레스 트로이카(1985-1991)

위와 같은 형벌의 확대 등으로 인한 보수적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율이 높아짐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는데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여 소련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서 법도 전면 개혁되어 법치국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간 형법이 여러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볼때 체계가 없고 중복되는 등, 자기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 성격만 강조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형법의 정비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과잉의 범죄화도 비판을 받아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 형벌

의 인간화, 형법의 예방기능 강화, 조문의 현대적 표현 등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1987년에는 형법개정을 위한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총칙부분

(1) 제1조 (형법의 과제): 종래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만이 언급되었으나 초안에서는 교육과 예방기능이 강조되었고, (2) 제 2조 ①항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많았던 무죄추정의 원칙도 분명히 했고, ③항은 죄형법정주의가 행형법에도 확대 적용케 하였고, ④항은 확대해석과 축소해석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였다.

(3) 제 3조는 시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 (4) 제 4조는 개별책임주의, 5) 제 5조는 책임주의원칙을 규정했다. (6) 제 6조 ①항은 형사정책상의 책임의 불가피성, ②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7) 제 7조 ①항은 형벌은 행위자의 개선과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가해야 한다는 것, (8) 제 8조 ②항은 행위의 경중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한 죄와 누범은 엄한 형벌로, 경한죄와 초범자는 비자유 박탈형과 같은 경한 형법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8조의 ①항에서는 범죄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범죄로 취급할 수 없고,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행위의 무가치성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았다. (9) 제 54조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새로이 합법적, 전문적 행위로 인한 피해개념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이 생산업무를 중대시켰거나 특정영역의 전문적 행위가 긍정적 결과를 성취했거나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 2) 각칙부분

① 동성연애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사에 의한 낙태는 모체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경우만 처벌토록 했다. → 음화 폭력비디오의 배포는 여전히 처벌함.

- ② 환경에 대한 죄의 장을 신설하여 환경·공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③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등의 사적 경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적 규율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 ④ 국가에 대한 죄가 대폭 축소되었고
- ⑤ 사형폐지론의 영향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대폭 축소했고 해외 추방제도는 폐지하였다.  
그 외 유형·추방형의 폐지. 자유형의 최고를 15년에서 10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 되었다.

#### ※러시아 형법의 발전의 단계를 요약해보면

##### ① 제 1기(1917-1921)

i ) 법전의 일반적 원리의 점진적 구성, ii) 짜르정권의 모든 사법체제와 감옥체제의 광범위한 해체, iii) 짜르법정의 계획적 파괴, iv) 새로운 소비에트감옥체제의 설립 v) 짜르형사 입법의 폐지에 대신하는 새로운 소비에트 형법의 공포 등이다. 1919.12 사법인민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러시아 공화국 형사 입법에 관한 지도원리」가 공표되었다.

##### ② 제2기(1922-1923) -형법의 성문화

1922에 성문화형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합법성 형법 성문화에 대한 레닌의 조언 등을 통합한 것이었다. (외국의 간섭 전쟁과 반혁명의 시기동안에 채택 된 법령과, 형법 영역에 관한 다양한 소비에트 법원의 판례를 성문화 한 것임)

##### ③ 발전기(제 3기):1924—1958)

1924년에 헌법을 채택했고, 형법문제에 관한 일련의 연방 법령이 공포. 다양한 연방법령의 원리의 토대를 개별적 연방공화국 형법전에 적용토록 함.

##### ④ 현재(1958- )

1958년에 형법에 관한 새로운 연방 입법이 공포되었고, 연방구성공화국 형법전이 새로이 채택되었다.(제 22, 23차 공산당 대회에서 형법개혁

의 일반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내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가 공산당 강령에 규정되었다.

## 二. 소련형법개관 (1988년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함.)

### 1. 總則

1) 고의나 과실로 刑法에 규정된 사회적 위험행위를 한 사람만이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벌된다.  
→罪刑法定主義 + 責任主義적 입장,  
法院만이 判決 → 스탈린시대는 내무성 특별위원회도 판결기관이었다.

### 2) 刑法의 目的

영미에서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소련은 -- 「소련사회제도와 정치제도, 사회주의 소유제, 국민의 인격과 관리 및 자유, 그리고 전체사회 법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1)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결정하며 범죄를 저질은 사람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형벌을 확정한다.」고 했다.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범죄의 처벌은 법질서 보호에 있어 보조적 역할로 본다.(1961년 당강령)

### 3) 시간적 · 공간적 적용

장소적: 토지 · 국내수역 · 영해 · 영해를 넘어선 일정해역, 국제하천 및 국경을 흐는 호수, 국적군함, 비군사용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

## 10 比較法學 (第 14 輯)

나 외교특권, 형사면책특권자 외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국적인과 무국적자는 러시아 영토 밖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비록 관할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았다고 해도 러시아 법에 의해 처벌된다.

### 4) 범죄성, 처벌 가능성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는데

예외로 신법에 의하는 수도 있으나(소급효), 형량을 늘이거나 새로운 범죄를 제정하는 경우는 소급효가 없어 행위시법에 의한다.

### 5) 범죄의 정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작위, 부작위)라고 명시함→ 26년 형법(스탈린시대)에서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전에 규정된 사회방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어떠한 행위가 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와 범위는 매우 비슷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전의 조항에 따라 결정(§16)케 함으로서 유추해석을 허용하였다.”→ 68년 형법 기본 원칙에서 삭제되었다.

59-61년 형법전에서는 범죄는 높은 사회적 위험으로, 72-7년, 82년에서는 “중요한범죄”를 “처벌되는 일정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60년 형법에서는 모든 범죄는 각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고, 82년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형법(Zakon)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형법전의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범죄적 행위가 규정될 수 있으므로 법학자의 형법전 주석서나 대법원의 법전해설과 사법관행 등을 보충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게 되었다.

### 6) 고의와 과실

1) 58년; 26년에 삭제된 범죄구성요건인 피고인의 도덕적 범죄와 책임을 수록했는데 고의와 과실 두 방식으로 했다.

2) 제 8조 범인이 자신의 행위(자위·부자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바라거나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허용할 경우 그러한 범죄는 고의로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함(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감행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범죄는 확정적 고의를 요구하나 일부 행위는 불확정 고의로도 성립된다. ※ 불확정적인 것이란 위험의 결과를 예견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예견치 못한 경우이다.

### 3) 과실

- ① 인식 있는 과실;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하는데도 부주의로 결과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
- ② 인식 없는 과실;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임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했어야 함에도 예견치 못한 경우

### 7) 책임경감(감형)

#### (1) 미성년자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책임 감면사유임.

- ① 16세 미만 자는 형사미성년자이다. 다만 14-16미만 미성년자라도 살인의 고의로 신체를 손상케 하거나 강간, 강도강간, 절도, 강도 및 불법폭력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함.
- ② 16-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대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범죄나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교정될 수 있는 경우는 14-16세 자와 같이 교육적 성격의 강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적 사법적 심사 과정에서 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대개는 미성년자 사건을 전담위원회에 이송한다.

(2) 행위당시 책임무능력자(사회적인 위험행위를 범한자임에도 만성정신질환자, 일시적 정신착란자, 심신장애 및 기타 질병이나 상황으로 인해 행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행위를 방지 할 수 없었던 사람)→형사책임이 면제되고 강제의료조치를 받는다.

※ 책임무능력의 기준은 의학적(생물학적)법적(심리학적)으로 평가한다.-전문적 의견을 자료로 법관이 판단함.

그러나 홍분이나 명정상태에서의 범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8) 위법성조각사유

(1) 경미한 행위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여부는 법적 평가임: 즉 사실에 입각한 상황, 행위의 성격 범죄가 행해진 상황이나 조건, 위험스러운 결과의 부존재, 발생한 위험의 무의미성 등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함→개인적 성격에 관련된 구성요건은 형벌의 선고에만 영향을 주고 위법성조각사유는 아님.

(2) ①정당방위→ i) 어떤 행위가 위법자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위법행위에 대항하여 국가나 사회적 이익 또는 개인이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행위의 성질이나 위험성에 비춰 명백하게 균형을 잊지 않는 한 범죄를 구성치 않은다고 규정함.→정당방위는 국민의 경우에는 도덕적 의무이고, 법집행관리나 군인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다.

판례: 위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해야하고 공격자가 미성년자나 형사무능력자임을 방어자가 알고 있지 않는 한 미성년자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자가 위법행위가 종료된 것을 알았거나 침해를 야기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 위험이 부존재했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위가 종료된 직후나 종료여부가 방어자에게 불명확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함.)

ii) 상상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예

상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치 못한 반격행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됨.

iii) 상당성에 대해 하급법원은 방위와 공격의 수단의 동등성을 기계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되고 공격자와 방어자의 수(몇 명인가), 나이, 물리적 조건, 무기의 존재여부 장소와 시간,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서 정당방위권을 무효로 할 만큼 명백히 균형을 맺지 않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③ 긴급피난: i) 국가나 사회의 이익.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협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 다른 수단에 의해 제거될 수 없고 발생한 침해가 방지된 침해보다 덜 중요한 경우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한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위협의 예로는 홍수, 지진, 눈사태, 질병, 기근, 황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제동장치가 고장난 오토바이, 법적 보호받는 이익을 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등이다.

ii) 상당성: 발생한 침해와 방지된 침해간의 균형성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데 법관이 법적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다.(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침해한 행위는 항상 긴급피난으로 보았다.) → 빵소니차에 치인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국영농장소속 불자동차를 몰래 타고가다가 611루블의 손해를 입힌자에 대해 절도부분은 적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침해를 피하기 위해 똑같은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 즉 타인을 죽게하면서 자기생명을 구하는 경우는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범죄로 보았다.

### 9) 형벌

(1) 목적: 범죄에 대한 징벌뿐 아니라 범인의 교정, 재교육, 범죄의 일반적인 예방이 목적임(옹보형이 아닌 교육형)

(2) 종류: 사형, 자유박탈형, 벌금형 외에도 流刑, 추방, 자유박탈

없는 교정 노동, 일정한 권리의 박탈, 공적 비난, 재산 몰수 등

i) 자유박탈 없는 교정 노동은 신체구속을 않고 하는 노동으로 직장이나 사회조직의 동지적 원조와 감독에 기대하며 일정율의 임금삭제라는 점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의 중간 형태이다.

ii) 사형: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면서 예외적 · 임시적 조치로 보고 있다. 1920년이나 1947년에는 폐지됐던 것이 58년 형법에서 사형으로 다시 규정된 것으로는 국가범죄(조국반역 스파이 테러 등), 가중살인죄가 있다, 61~62년 개정에서 사형건이 확대되어 국가 공공재산의 대규모 절취나 취득, 피구금시설 내의 테러, 통화유통 규칙위반(암달러 매매), 민경(民警)의 생명침해, 가중사정하의 강간 및 뇌물 수수도 사형이었다. 행위시나 판결선고시 또는 집행시에 18세 이하나 임신한 여자는 사형선고를 않으며 사형은 총살로 집행(1년에 약 200건 집행추산)한다.

87년 보도에 의하면 사형은 혁가중사유에 속하는 고의적 살인이나 강간 및 대규모 절도사건에만 선고되고 통화, 국제법을 위반한 위폐범에 대해서는 64년이후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iii) 자유형: 교도소나 교정 노동수용소에서 행하는데 3개월 ~ 15년까지 기간내에서 선고된다.

26년의 형법에서는 최고 20년(징역) 이었다.

iv) 추방 · 유형은 2년 ~ 5년기한 내에서, v) 자유박탈 않는 교정노동은 2개월 ~ 2년(지정된 사무소에 종사하거나 지정된 노동에 참여할 권리의 박탈 예컨대 자동차 운전권리 박탈 등)-1년 ~ 5년 기간내에서 선고함.

vi) 벌금형: 각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데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하고 현금 일시불 외 교정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

vii) 공직추방도 형벌로서 부과할 될 수 있다.

viii) 범죄자가 야기한 침해에 대해 직접배상이나 보상 또는 법원이 규정한 형식으로 회생자나 집단청구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여 범인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ix) 손해배상액은 500루블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이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x) 위법행위를 한 군인은 3개월~2년 기간내 정신교육대에 배치 한다.

자유박탈 않는 교정노역은 2개월 내 영창에 유치시키는 것으로 대치 가능하다.

xi) 유죄판결받은자의 개인재산의 몫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부과법원은 중요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부과형으로 군대계급이나 특별계급을 박탈당할 수 있고 훈장, 메달, 명예칭호의 박탈을 관계기관에 권고 할 수 있다.

#### 10) 과형

① 양형의 참작사유; 범죄의 성격과 정도, 범인의 인격 및 감경사유 가중사유를 고려한다.

(형법전은 각 사유 형태의 보기를 목록으로 만들어 규정하고 있다.)

##### i )감형사유:

- a) 범인이 범죄로부터 야기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하거나 요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범행한 경우.
- b) 위협이나 강제 또는 물질적 직업적 의존관계로 범행한 경우.
- c) 미성년자나 임신한 여자.
- d) 거짓말 없는 참회 등.

##### ii ) 가중사유

- a) 재범, 조직적 집단의 범죄.
- b) 영리목적이나 기타 비열한 동기로 인한 범죄.
- c) 미성년, 노인 또는 무기력한 자에게 대한 범죄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
- d) 무고 및 홍분이나 명정상태에서 한 범행 등.  
·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벼운 형벌은 부과 할 수 있으나

법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 e) 초범은 다양한 형태의 형이 부과된다.
  - 선량한 행위를 하겠다는 조건의 선고유예.
  - 모범적인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 사회조직이나 노동자 집단의 보증하에 석방도 가능함.
  - 조건부 조기 감경이나 보다 가벼운 형벌로 대체도 가능.
- f)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조건부 석방이나 일정기간 강제노역 선고로 대치가능.
- g) 미성년자의 경우: 행정소송절차로 이관되거나 인민법원에 회부도 가능함.
- h) 재범은 엄격하게 취급된다. 상습범은 가중 형벌이나 보다 가혹한 교정 노역 수용소의 부역을 선고받고, 석방후에도 계속 감시를 받는다.
- iv) 집행유예 가석방제도: 특히 위험한 범죄나 일정한 중범죄자는 가석방요건으로서 복역기간을 형기의 2/3까지 연장하기도 하나, 대체로 완전한 가석방은 인정 안되고 있다.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무겁게 처리한다는 2원적 개별화 경향의 표현임)

#### 11) 강제입원, 교육형

법원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있었으나 판결이 내리기 전에 책임무능력자가 된 경우, 복역중 정신병에 걸려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입원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님(형벌도 아님)

1) 강제입원의 목적은 정신병자를 치료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있고 혼란된 정신에서 야기되는 위험한 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법원은 정신병자나 직계친족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없이도 부과 할 수 있

고 이에 대한 집행은 검찰관이 공중보건기관과 함께 감독시행 한다.  
(특별정신병원 입원은 사회에 대해 극히 위험한 사람에 한해 시행함)  
강제입원조치 부과 절차는 검찰청, 연방대법원 및 공공질서 보호성이 합  
의하여 보건성이 승인한 67년의 시행령에 따라 행한다.

법원이 강제 입원조치를 할 때 전문가의 견해를 기초로 하나 이에 기  
속되지는 않는다. 퇴원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 될 때까지인데 6개  
월마다 그 여부를 검토한 뒤 법원에 변경이나 종료를 권고할 수 있다.→  
반체제 인사탄압 방법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다.

범죄한 주정뱅이나 알콜중독자는法院의 심리로 강제 입원조치를 할  
수 가 있으나 입원시킬 의학적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견해가 있으면 강  
제입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강제입원 후의 치료는 의료기관의 권고  
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3) 강제교육 조치는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  
단하는 미성년자에 한 하는데 ①희생자에 대한 사과 ②징계나 경고 ③  
미성년자가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 ④특수훈련 교육 ⑤교육 ⑥의료 ⑦  
교육 기관에의 강제 이송 등 7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 II. 各則

1960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 및 일람표가 기초가 된  
다.

국가범죄와 사회주의 재산에 관한 죄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과거에 비해 개인법익(인격, 재산, 권리)에 대한 죄도 중요하게 보호하  
고 있다.

### 1. 반소 선동선전죄(§70)

소련을 전복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선동·선전행위 또는 국가에 대해 매우 위험한 특수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또는 같은 목적으로 소련의 사회체제를 비방하거나 허위문서의 유포행위, 혹은 같은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헌을 유포, 준비 소지하는 행위 6개월~7년 기한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2년~5년간의 국외 추방형 처한다.

→ 고의적으로 소련식 생활양식이나 정부형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유포된 정보가 중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학술목적이나 일기에 기록하는 등의 개인적 메모는 타인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서적, 소책자, 논문, 레코드, 사진, 테이프 등을 전시 우송 표시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 2. 위험회피행위(§127)

국민은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응급구조)→도움을 줄 수 있었거나, 회생자를 돌볼 의무가 있거나, 또는 그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를 한자가 응급구조를 안하면 6개월간 교정노역형이나 2년간 징역에 처한다.→ 구조의무는 ①법적의무(자식에 대한 부모 ②직무상 임무(유치원교사) ③계약(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원) ④사회주의의 도덕규범(여름 순회공연에 참가하도록 초청받은 심장병환자를 유기한 행위) ⑤자기행위로 위험에 빠진 경우 등에 발생한다.

### 3.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죄

국가경제의 기초를 위협하는 중죄이다.

#### 4. 개인적법의에 관한 죄

① 규격미달 제품의 공급, 협동조합형식을 가장한 사적 기업 활동, 투기·사기판매, 불법 알콜 제조, 불법수렵 등의 죄 외에도 계획수행보고의 허위기재, 사료용 곡물의 매점, 알콜음료판매 규칙위반, 모피불법매매 등이 추가 되었다.

②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점 매석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③ 투기행위(대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금전적 가치를 갖는 생산품) 즉 공산품, 농산물, 수제품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 탄약, 외설물 등) 다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익을 위해 전매하면 현금이나 증권투기와 같이 별개의 범죄로 처벌한다.

④ 매점행위는 전매하기 위해 현찰이나 현물로 상품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체재산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협동조합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단일 품목 또는 여러 품목을 구입하는 행위이다.

#### 6. 직무범죄

뇌물죄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가중형으로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 7. 재판에 대한 죄

① 무죄임이 분명한데도 사법관리가 부정으로 기소, 부정판결, 불법체포 및 구금, 진술강요한 경우

② 일반시민이 위증, 무고, 도주 등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은닉 미신고 등의 경우에 처벌된다.

### 8. 행정질서에 대한 죄

종류가 많으나 ①공무집행 방해는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허위정보의 전파 국가모욕,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집단적 행위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등의 경우 본죄에 해당된다.

### 9.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죄

- ① 무뢰(無賴)행위라는 범죄유형이 있다. 이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대한 명확한 모독을 표현하는 행위로 단순무뢰의 가중유형이 있으나 경미한 무뢰는 벌하지 않는다.
- ② 조직적인 부랑·걸식 및 장기적인 기생생활.
- ③ 어린이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행위, 만취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
- ④ 음주운전이나 무임승차.
- ⑤ 항공기 내에 폭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 ⑥ 공해와 관련하여 공장폐기물로 강이나 호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선박폐기물 처리로 바다를 오염시킨 경우 등을 처벌하고 있다.

### 10. 지역관습법의 존속

각 지역의 관습법 예컨대 유혈복수, 신부매매, 혼인강요나 방해 미성년자의 약혼, 이중혼 일부다처제 등도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형법의 지도원리(guidance of criminal), 신경제 정책(New Economic Policy), 중요한 범죄(a heavy crime), 형사책임(criminal responsibility), 강제입원(firced hospitalization), 강제교육(forced instruction). 국가범죄(a state crime), 허위정보(a fraud information), 지역관습법 (a local customary law)

**〈Abstract〉**

A Survey of Russian Criminal Law

Lee, Tae Eun

The history of Russian criminal law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Russian criminal legislation does not keep pace with the stage of social economic development, but instead it has served the urgent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urposes. The development of Russian Criminal Law may be classified into following several stages.

1. Wartime Socialist Period

The criminal law played a role in preserving the socialist legal order from criminal infringement, furthering the actual realization of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personal control over labor and consump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for his/her own actions. Russia criminal legislation furthers the struggle with crimes against peace and the safety of mankind and promotes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peoples.

2. New Economic Policy

It shall consist of the present Fundamentals, which define the principles and lay dow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egislation of the Russia; of all-Union laws which provide for

responsibility for specific crimes and of the criminal codes of the Union Republics.

### 3. Post-Stalin Period

Russian Criminal Law took its tasks in protecting the social system of the Russia; it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person,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state and cooperative property, and also the property of social organization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ll of the socialist legal order, from criminal infringement; and also furtherance of the protection of peace.

### 4. Perestroika Period

Criminal responsibility shall be based upon the commission of an act, having all of the indicia of a crime provided for by the criminal law. The ques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of foreign states and of other citizen who, under the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do not co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Russia courts in criminal cases, shall, in the event that such persons commit a crim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 be decided by diplomatic means.